

# 서울특별시종로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1043
----------	------

제출일자 : 2004. 9.

제 출 자 : 종로구청장

## 1. 개정이유

- 가. “국민의료보험법”이 “국민건강보험법”으로, “의료보호법”이 “의료급여법”으로 법령이 변경되었고, 위생분야종사자등의건강진단규칙 개정에 따른 건강진단수첩제 폐지로 건강진단수첩에 대한 명칭이 변경되었으며,
- 나. 전염병예방법제11조 정기예방접종 종목의 개정과 백신의 활용가능성 변화에 맞추어 유료접종의 종목을 정비하고자 조례의 관련규정을 개정하려는 것임.

## 2. 주요골자

- 가. 상위법이 변경됨에 따라 “국민의료보험법”을 “국민건강보험법”으로, “국민의료보험법 제38조”를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로, “의료보호법시행규칙 제3조”를 “의료급여법시행령 제3조”로, “1종 보호대상자, 2종 보호대상자 및 의료부조대상자”를 “1종 수급권자, 2종 수급권자”로 개정하고, 의료부조대상자를 삭제함

(안 제2조, 제3조, 별표)

- 나. 유료접종대상종목 중 홍역, 볼거리, 풍진, 디프테리아, 렙토스피라증은 삭제하고, B형간염 임신예방접종은 유료접종항목에 추가하며, 수수료 금액은 약품의 최근 구입가격으로 정하도록 함 (별표의 제3호)

##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규

- 1) 국민건강보험법 (1999. 2. 8 제정)
- 2) 의료급여법 (2001. 5.24 개정)

- 3) 의료급여법시행령 (2001. 9.29 개정)
- 4) 위생분야중사자등의건강진단규칙 (1999. 5. 29 개정)
- 5) 전염병예방법제11조(2000.1.12개정)

※ 지참사항

- 1) 서울특별시 의약65343-2446(1999.8.5)호에 의한 “'99년도  
성병관리지침”
- 2)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에서 발행한 “법정전염병 진단·신고기준”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운영 전염병정보망(Disweb) 자료

나. 예산조치 : 비 예산사업

다. 기 타

- 1) 입법예고 : 생 략
- 2) 기 타 : 신·구조문 대비표

서울특별시종로구조례 제 호

## 서울특별시종로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종로구보건소수가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1항중 “국민의료보험법”을 “국민건강보험법”으로, “국민의료보험법 제38조”를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로 하고, 동조제2항1호중 “건강진단수첩”을 “건강진단결과서”로 한다.

제3조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의료보호법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한 1종 수급권자 및 2종 수급권자에 대하여는 별표 제2호, 제3호에서 정한 수수료를 면제한다.

별표의 제목 “수수료액표”를 “수수료액표(제2조제2항과 관련)”로 하고, 구분란의 제1호중 “건강진단수첩”을 “건강진단결과서”로 하며, 3. 유료접종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구 분	종 목	단 위	금 액	비 고
3. 유료접종	가. 일본뇌염	1인분	보건소장의 유료접종 수수료는 약품의 최근 구입가격으로 한다.	
	나. B형간염 (임시예방접종)	1인분	단, 10자리 이하의 금액은 1원 이상 49원 이내의 경우에 50원으로 하고 51원 이상 99원 이내의 경우에는 100원으로 한다.	

구 분	종 목	단 위	금 액	비 고
3. 유료접종	다. 장티푸스	경구용 1인분 또는 주사제		
	라. 유행성 출혈열	0.5ml		
	마. 인플루엔자	1인분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구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수수료 및 진료비) ①<u>국민의료보험법에 의한 진료시의 의료수가는 국민의료보험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진료수가 기준에 의한다.</u></p> <p>②~③ (생략)</p> <p>1. <u>건강진단수첩 및 진단서 제증명</u></p> <p>2.~6. (생략)</p> <p>제3조(수수료 및 진료비의 면제) ①<u>의료보호법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한 1종 보호대상자, 2종 보호대상자 및 의료부조대상자에 대하여는 제2조 별표 중 제2호, 제3호에서 정한 수수료를 면제한다.</u></p> <p>②~③ (생략)</p>	<p>제2조(수수료 및 진료비) ①<u>국민건강보험법 -----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 -----</u></p> <p>②~③ (현행과 같음)</p> <p>1. <u>건강진단결과서 -----</u></p> <p>2.~6. (현행과 같음)</p> <p>제3조(수수료 및 진료비의 면제) ①<u>의료급여법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한 1종 수급권자 및 2종 수급권자에 대하여는 별표 제2호, 제3호에서 정한 수수료를 면제한다.</u></p> <p>②~③ (현행과 같음)</p>

(별표)

현행				개정안			
수수료 액표				수수료 액표(제2조제2항 관련)			
구분	종목	단위	금액	구분	종목	단위	금액
1. 건강진단수첩 및 진단서, 제증명	가.~바.(생략) 사. 위생분야종사자 건강진단수첩 또는 진단서 아. (생략)	(생략)	(생략)	1. 건강진단결과서 ----- ----- -----	가.~바. (현행과 같음) 사. ----- -- 건강진단결과서 ----- ----- 아.(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2. 항결핵제 보급	(생략)	(생략)	(생략)	2. ----- -----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3. 유료집종	가. 일본뇌염 나. 홍역, 볼거리, 풍진 다. 장티푸스 라. 유행성출혈열 마. 렙토스피라증 바. 디프테리아 사. 인플루엔자	1ml 혼합백신 1회분 (1ml) 경구용 1인분 또는 주사제 0.5ml 1ml 0.5ml 0.5ml	가. (생략) 나. 진염병예방법 규정에 의하여 지정받은 병·의원의 진종수수료는 약품공급가격과 의료보험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진료수가 기준 중 생물학적 제제주사료불가산한 금액으로 하되 일본뇌염집종은 피하근육주사료 적용한다. 단, 10자리이하 금액의 산정은 "가"항 단서의 규정에 준한다. 다. 진할에 의한 지정병의원에서의 유료집종 약품공급 가격은 구입가격으로 하며, 1회용 주사기를 무료로 공급할 수 있다. 단, 매회 공급총액의 10자리이하 금액의 산정은 "가"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다. 500원 3,000원	3. --- ---	가. ----- 나. B형간염(임시예방집종) 다. ----- 라. ----- 마. (삭제) 바. (삭제) 사. -----	1인분 1인분 ----- ----- ----- ----- ----- 1인분	보건소장의 유료집종 수수료는 약품의 최근 구입가격으로 한다. 단, 10자리 이하의 금액은 1원 이상 49원 이내의 경우에 50원으로 하고 51원 이상 99원 이내의 경우에는 100원으로 한다.
4. 검사	(생략)	(생략)	(생략)	4. ---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5. 의료기관개설허가 등	(생략)	(생략)	(생략)	5. --- -----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6. 치료진료	(생략)	(생략)	(생략)	6. -----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